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9 |
|----------|----|

제출년월일 : 2000년 4월 일  
제출자 : 달성군



## 1.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3.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함(안 제2조)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감면하며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함(안 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향토문화 보호와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종전 재산세 0.15% 과세, 종합토지세 50%경감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함(안 제9조)
-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도심의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토록 함(안 제14조, 제15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의 대·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 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의 제목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1. 배기량 2,000㎤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 또는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사업개시일
2.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br/> <u>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p> |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p> |

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의 대·폐차로 인하여 1대  
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  
서 신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생략)

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  
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  
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의 대·폐차로 인하여 1대  
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  
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  
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  
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  
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의 대·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  |   |
|--|---|
|  | <p><u>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 자동차</u></p> <p><u>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u></p> <p><u>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u></p> <p><u>4. 이륜자동차</u></p>                    |
| <p>② (생략)</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br/>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 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 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1. ~ 3. (생략)</p> <p>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br/>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삭 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  
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  
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  
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  
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  
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  
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  
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  
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  
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 〈삭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과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 또는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 또는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는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